

보상계획 열람 · 공고

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정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제26조(협의 등 절차의 준용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0일

옥 천 군 수

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 업 명 : 문정공원 조성공사
- 나. 사업시행자 : 옥천군수(산림복지과)
- 다. 사 업 구 간 :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03-2번지 일원
- 라. 사 업 량 : 공원조성 A=53,093㎡

2.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

- 가. 토 지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03-2번지 외 57필지
- 나. 지장물건 : 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
- ※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

3. 보상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시기 : 2020년 8월 중 개별통지(사전절차 이행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나. 보상방법 : 현금보상
- 다. 보상금산정방법(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)
 - 1) 평가기관 :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(도지사,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시 3인)
 - 2) 산정금액 :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
- 라. 보상절차 :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
(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음)
 - 보상계획통지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확정 또는 보상협의(대상지) → 감정평가 →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(소유권 변경) → (협의 불성립 시) 재결절차 이행 등

마.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

4.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기간 : 2020. 7. 10. ~ 2020. 7. 24.(14일간)
- 나. 이의신청 :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: 옥천군 산림복지과 산림보호팀

5. 기타사항

- 가.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등기·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나. 토지소재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

-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각자 추천할 수 있으며, 이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달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라.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,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, 공사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합니다.
- 마. **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- 바.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(☎043-730-348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